

의안번호	2218128
의 퇴 인	신장식 의원
회 답 일	2026.5.28.
추계번호	26B1902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며, 업종별·노무제 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2억 1,000만원, 2031년 1억 4,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8,800만원(연평균 1억 5,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안 제25조)	12	12	12	12	12	60	12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7조)	33	33	33	33	33	167	33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28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10	144	144	144	144	788	15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2조(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의무규정
		일하는 사람은 안전과 건강의 유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터에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	의무규정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일을 중지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18조(고충처리)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고충처리위원은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항)	의무·재량규정
		고충처리위원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그 밖의 처리 결과를 그 일하는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9조(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일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재량규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22조(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	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3조(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등)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조건 등에 관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단체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제2항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제1항의 단체는 제3항의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제3항의 협약 또는 협정의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사이의 노무공급계약을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24조(이의 제기 및 분쟁해결)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보수, 기본적 권리 등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제23조 제1항의 단체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 또는 제23조제1항의 단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단체 또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로부터 노무공급계약의 부당해지 등을 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고객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5조(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성·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제3항)	의무규정
		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4항)	의무규정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9	안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27조(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의 내용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28조(표준계약서의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9조(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30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 이 법과 보호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12조(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18조(고충처리)	—	• 미대상 – 제정안은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임 – 제정안에 규정된 사업주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을 제공받아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므로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9조(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22조(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	—	• 미대상 － 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23조(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약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24조(이의 제기 및 분쟁해결)	x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 또는 일하는 사람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단체 또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노동위원회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제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 조정 및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접수 건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의 규모와 장래에 발생할 조정·시정 신청 건수와 이로 인한 위원회 개최 규모와 횟수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신청 건수와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총 7개의 분과위원회(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있음 [표 2] 중앙노동위원회 예결산 현황(지노위 포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예산액</th><th colspan="4">집행액</th></tr><tr><th>합 계</th><th>회의경비</th><th>사무처 경비</th><th>사업경비</th><th>합 계</th><th>회의경비</th><th>사무처 경비</th><th>사업경비</th></tr><tr><td>2022년</td><td>44,341</td><td>5,091</td><td>30,029</td><td>9,221</td><td>42,654</td><td>5,090</td><td>29,334</td><td>8,230</td></tr><tr><td>2023년</td><td>44,881</td><td>5,530</td><td>30,843</td><td>8,508</td><td>45,090</td><td>5,884</td><td>30,453</td><td>8,753</td></tr><tr><td>2024년</td><td>46,693</td><td>6,256</td><td>32,007</td><td>8,430</td><td>47,762</td><td>6,648</td><td>32,414</td><td>8,700</td></tr><tr><td>2025년</td><td>53,974</td><td>6,256</td><td>33,156</td><td>14,562</td><td>—</td><td>—</td><td>—</td><td>—</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 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341	5,091	30,029	9,221	42,654	5,090	29,334	8,230	2023년	44,881	5,530	30,843	8,508	45,090	5,884	30,453	8,753	2024년	46,693	6,256	32,007	8,430	47,762	6,648	32,414	8,700	2025년	53,974	6,256	33,156	14,562	—	—	—	—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 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341	5,091	30,029	9,221	42,654	5,090	29,334	8,230																																																
2023년	44,881	5,530	30,843	8,508	45,090	5,884	30,453	8,753																																																
2024년	46,693	6,256	32,007	8,430	47,762	6,648	32,414	8,700																																																
2025년	53,974	6,256	33,156	14,562	—	—	—	—																																																
8	안 제25조(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9	안 제26조(권한의 위임)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27조(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11	안 제28조(표준 계약서의 보급)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12	안 제29조(대지급금의 지급)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지급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²⁾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고 있음 － 제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래에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다만, 현행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확대될 대지급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장래에 발생할 일하는 사람의 규모와 향후 발생할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검토하기 어려우며,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행태변화, 경기변동, 임금체불 발생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재정변화 추산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30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 이 법과 보호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고용노동부의 조직 및 인력 등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각 대표자를 사업자로 본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을 제공받아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 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 또는 소개하여 보수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2) 사업코드: 3051-30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안 제25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성·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문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제정안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
 - (민간위원 수) 10인으로 가정
 - (회의 개최 횟수)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³⁾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 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 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나.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서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산하며,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산출
 - 이때, 용역단가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3,3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7조)	33	33	33	33	33	167	3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28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건

[표 5] 표준계약서의 개발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6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6	66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5	66
2024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4	66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2026년 4월 15일 접속

- 이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한 비용은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보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유사사례의 평균금액을 준용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매년 2건(업종별 1건, 노무제공방식별 1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업종별, 노무제공방식별 연구용역 5,000만원/건

[표 6]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2024	50
경기도 표준계약서(프리랜서 강사) 개발 및 보급	경기도	2024	50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서울특별시	2024	49
평균			50

자료: 나라장터

[표 7]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안 제28조)	165	99	99	99	99	563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며,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안 제25조)	12	12	12	12	12	60	12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및 보급(안 제27조)	33	33	33	33	33	167	33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28조)	165	99	99	99	99	563	113
추가재정소요	210	144	144	144	144	788	158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